

서비스가격

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, 2급 유형은 7만원

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

- (1)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 : 본인부담률 0%
 - (2) 기준 중위소득 70% 초과 ~ 120% 이하 : 본인부담률 10%
 - (3)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~ 180% 이하 : 본인부담률 20%
 - (4) 기준 중위소득 180% 초과 : 본인부담률 30%
- ※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,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%

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

구 분	기준중위소득				
	70% 이하 (1급-가유형)	70% 초과~ 120% 이하 (1급-나유형)	120% 초과~ 180% 이하 (1급-다유형)	180% 초과 (1급-라유형)	
1회당	정부 지원금	80,000원	72,000원	64,000원	56,000원
	본인 부담금	-	8,000원	16,000원	24,000원
	합계	80,000원	80,000원	80,000원	80,000원
총 8회	정부 지원금	640,000원	576,000원	512,000원	448,000원
	본인 부담금	-	64,000원	128,000원	192,000원
	합계	640,000원	640,000원	640,000원	640,000원

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

구 분	기준중위소득				
	70% 이하 (2급-가유형)	70% 초과~ 120% 이하 (2급-나유형)	120% 초과~ 180% 이하 (2급-다유형)	180% 초과 (2급-라유형)	
1회당	정부 지원금	70,000원	63,000원	56,000원	49,000원
	본인 부담금	-	7,000원	14,000원	21,000원
	합계	70,000원	70,000원	70,000원	70,000원
총 8회	정부 지원금	560,000원	504,000원	448,000원	392,000원
	본인 부담금	-	56,000원	112,000원	168,000원
	합계	560,000원	560,000원	560,000원	560,000원

이용절차

-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**본인의 주소지에 상관 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**하여, 서비스 제공을 신청
(전화, 인터넷, 방문 신청)
※ 지역별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(www.socialservice.or.kr) 검색 가능
-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,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

비용결제

-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(바우처 카드)로 결제
※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(계좌 입금, 카드, 현금납부)

유의사항

- 서비스 신청은 **2024년 하반기 중 1회만** 가능합니다.
-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**서비스 유형(1급/2급 유형) 변경이 불가**하므로, 신청 시 신중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.
-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,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합니다.
- **서비스 지원기간**(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)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,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 됩니다.

문의처

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
☎ 129 / 🌐 www.129.go.kr



202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





사업목적

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,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봄

지원내용

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(1회당 최소 50분 이상, 1:1 대면)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

※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

신청기간

2024. 7. 1. ~ 12. 31. (예산소진 시까지)

지원대상

- 대상 1**

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대상 2**

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·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대상 3**

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
- 대상 4**

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- 대상 5**

「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*」을 통해 의뢰된 자
 *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('22~, 부산 등)

서비스유형

대상자는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

※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

1급 유형	2급 유형
<p>① 국가전문자격 :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, 청소년상담사 1급, 전문상담교사 1급</p> <p>② 민간자격 : 임상심리전문가(한국심리학회), 상담심리사 1급(한국상담심리학회/한국심리학회), 전문상담사 1급(한국상담학회)</p>	<p>① 국가전문자격 :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, 청소년상담사 2급, 전문상담교사 2급</p> <p>② 국가기술자격 : 임상심리사 1급</p> <p>③ 민간자격 : 상담심리사 2급(한국상담심리학회/한국심리학회), 전문상담사 2급(한국상담학회)</p>

신청방법

- 대상자별 증빙서류**

대상 1

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클래스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
 -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(예 :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, 직업트라우마센터, 고용복지플러스센터(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) 등)
 -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에서도 의뢰서 발급 가능

※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
- 대상 2**

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- 대상 3**

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(신청일 기준 1년 이내)
- 대상 4**

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: 보호종료확인서
 보호연장아동 : 시설재원증명서/가정위탁보호 확인서
- 대상 5**

「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」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
신청 자격 본인, 친족, 법정대리인, 담당공무원

신청 장소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
※ 온라인(복지로) 신청 : 2024년 10월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 예정